



농촌진흥청

# 농 촌 진 흥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 등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귀 기관(협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청에서는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라 위임된 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 및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고시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9.9.15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정(안)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3. 시·도에서는 관내 비료업자에게 상기내용이 통보될 수 있도록 일선 시·군·구청장 및 비료업자에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상기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행정정보-법령정보)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현행	행정예고안	수정안	검토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- 붙임 1. 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 중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(농진청 공고 제 2019-259호) 1부
2.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중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(농진청 공고 제2019-260호) 1부. 끝.

